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편성지침

국회 제출·보고 기한 조정〉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24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편성지침 국회 제출·보고 기한 조정 (안 제7조, 제30조 및 제66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7.

다. 회 부 일 : 2025.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산 절차의 명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30조 및 제66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편성지침 국회 제출·보고 기한 조정 (안 제7조, 제30조 및 제66조)

현 행	개 정 안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 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 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u>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 지</u>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u>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 침</u>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 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 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u>6월 30일까지</u>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함 ○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u>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 침</u>을 매년 4월 15일까지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현행법¹⁾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인 국가재정

1)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²⁾은 기획예산처장이 각 중앙관서의 장 등에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고기한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시한을 6월 30일까지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시한을 4월 15일로 명시하려는 것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자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전망, 재정규모증가율,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2) 「국가재정법」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조세부담률 전망, 통합재정수지 전망 등이 포함됨.

그런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안과 같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된 내용인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이나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예산안에 대한 거시적인 심사 역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현행법 제7조제9항³⁾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이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이 되는 만큼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고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은 전반적인 재정규모나 재원배분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비율 등도 포함되지 않은 채 전반적인 방향만을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음.

3)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앞당김으로써 예산안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케 하고,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거시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차년도의 예산안 총량 및 분야·부문별 규모, 재정수지, 국가채무가 포함되는데, 그 총량 및 규모 등은 9월 초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시 확정되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6월말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23~'24년 대규모 세수결손 등을 감안할 때 지출 총량을 결정하는 세입전망의 정확성이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상반기에 세입을 정확히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6월말까지 조기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틀을 마련하기는 곤란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7조제9항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6월말까지 조기에 제출할 필요성도 낮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부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기한을

매년 4월 15일로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⁴⁾이 논의된 바 있으며, 그 보고 기한을 매년 3월 31일까지로 의결⁵⁾한 바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달성된 것으로 보임.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안, 의안번호 제2206546호)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214178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결일 2025.9.25., 2026. 1. 29. 본회의 의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u>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u>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u>6월 30일까지</u> -----.
② ~ ⑪ (생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u>예산안편성지침</u> 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 ----- ----- --- <u>예산안편성지침</u> 을 매년 4월 15일 <u>까지</u> ----- -----.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 ③ (생략)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u>작성지침</u> 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 ----- <u>작성지침</u> 을 매년 4월 15일 <u>까지</u> -----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1